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등〉

■ 최승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887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7
2. 합의를 통한 하도급대금 연동 미실시를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로 제한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승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3. 12. 11.
3. 회 부 일 : 2023.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주조(鑄造)·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

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2조제16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⑯ -----“주요 재료비등”이란-----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비용을----- 다만,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⑰ -----재료비등-----

현행	개정안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u>원재료</u>,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략) ③ (생략)	----- ----- -----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재료</u> <u>비등</u>-----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원사업자와</u>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 ⑫ (생략)	④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와</u>----- ----- ----- ⑤ ~ ⑫ (현행과 같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²⁾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4일부터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특히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실효적인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자발적으로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안 제2조제16항 본문 및 제2조제17항)하고, “주요 재료비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하되,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항 단서 신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하도급대금 연동이 제외되는 경우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3조제4항제4호).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 또는 경비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례로 금형(金型)·주조(鑄造)·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 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개정안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나 각종 경비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업체 간 계약에 기반을 둔 거래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조정·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내용을 계약 이후의 사정에 따라 연동시켜 변경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의 특성상, 계약의 기반이 되는 거래대금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전반에 대해 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양 당사자가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하여 합의한 거래조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거래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의 거래조건 제시에 대한 책임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노무비, 경비는 일반물가 추이에 따라 변동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원재료 가격이 지나치게 급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측의 손해를 일정부분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분담하고자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음.

□ 현행법 제16조의2³⁾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여 경비·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 협의가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조정협의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협의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음.⁴⁾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적자치의 과도한 침해 발생이 우려되고,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도 상당하여 연동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중소 원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4) 당초에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이상 변동한 경우, 경비가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협상대행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협상대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

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재료비등”을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비용으로 정하되,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업종에 따라 재료비등의 다양성에 차이가 있어 재료 각각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⁵⁾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연동문화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연동 기준의 구체적 합리성 제고 및 연동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 정무위원회는 주요 원재료의 하도급연동비율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2023년 2월 20일)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은 규율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대안을 처리하였음(2023년 3월 27일).

2. 합의를 통한 하도급대금 연동 미실시를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로 제한

□ 현행법 제3조제4항제4호는 하도급거래의 양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하도급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함.

□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려는 것으로, 원사업자의 연동 미실시 합의 강요를 통한 연동의무 회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를 통한 연동의무 회피 등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현행법 제3조제5항⁶⁾ 등을 근거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벌점 5.1점(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부과⁷⁾하도록 하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중 발체

며, 현행법 제30조의2제4항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문 의 처
02) 6788-5109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